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7.14일)

---

#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

2022. 7.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b>I. 가계·기업대출 및 취약부채 현황</b> .....	<b>1</b>
<b>II.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영향</b> .....	<b>2</b>
<b>III.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b> .....	<b>6</b>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6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8
3.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	9
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	10
<b>IV. 향후 추진계획</b> .....	<b>11</b>

# I. 가계·기업대출 및 취약부채 현황

## □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리상승 가속화

-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민간부채(가계+기업)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21년 하반기부터 시장·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



## □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변동금리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

- 가계부채는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증가, 소상공인 등 기업부채는 영업부진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주요 위험요인

민간부채 주요 취약부문(예시)

('21말, 조원)

가계부채 1,860조원		기업부채 2,355조원	
주택담보	820	자영업자	600 (310 + 가계부채)
전세대출	162	중소법인	730
신용대출	270	대기업, 회사채	1025
기타	609		

\* 변동금리 46.3%  
 \* 청년 120(74%)  
 \* 위험투자 (주식, 가상자산 등)  
 \* 부실위험 82조원(9.2%) (다중채무&(저소득or저신용))  
 \* 경영환경 악화 (인력난, 원자재가격 상승, 매출 부진)

※ 2030 부채 : 508조원(27%)  
 ※※ 기타 :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 II.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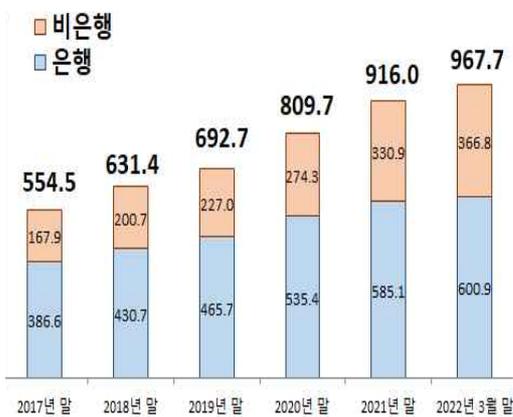
### □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실화 가능성

- 만기연장 등에 힘입어 지표상 연체율은 아직 양호\*하나, 코로나19 위기중 매출부진\*\*을 추가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부담이 누적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19) 0.71 ('20) 0.59 ('21) 0.43 ('22.3) 0.45

\*\* 자영업자 연평균 매출액(백만원) : ('17) 174 ('18) 172 ('19) 169 ('20) 157 ('21) 164

개인사업자 보유대출 증감(조원)



자영업자 연간 소득대비 상환액(D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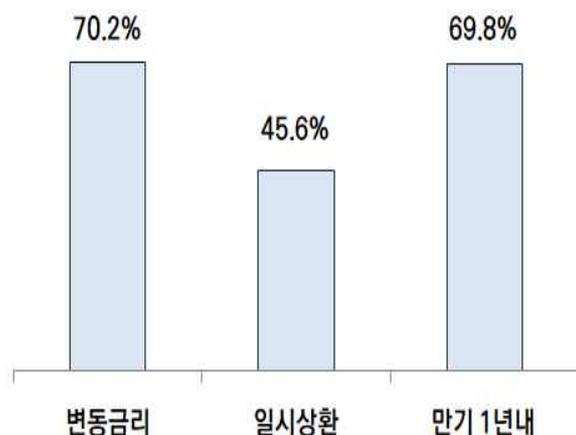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비은행을 이용하거나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자가 급증하는 등 부실위험이 증가

- 자영업자 등은 변동금리·일시상환·단기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리스크에 취약하고, 차환리스크도 큰 편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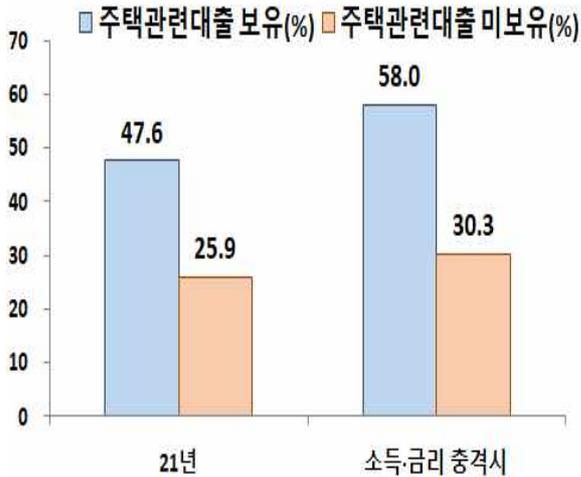
자영업자 대출 특징(비중)



## □ 주거 관련 가계차주의 금융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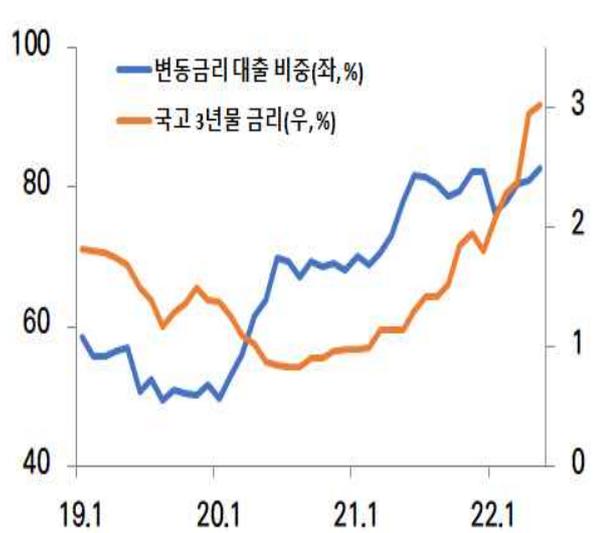
- 대출규모가 크고, 변동금리 조건이 많은 주택관련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라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

주택관련대출 보유여부별 DSR 변동(한은)



\* 소득증가율 2.9% → △5%p, 대출금리 4.5% → 4.7% 가정(22.1Q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신규취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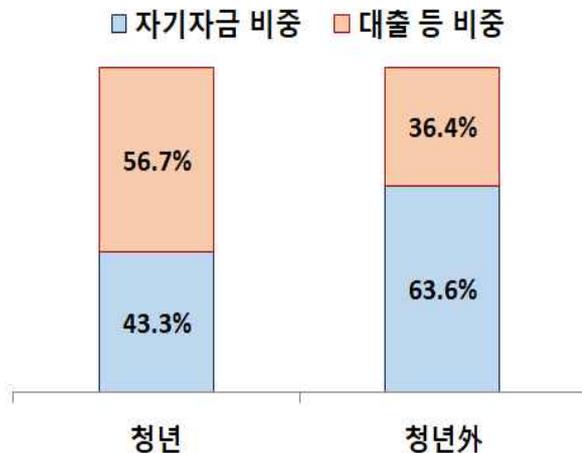
- 특히, '20.下~'21년 주택가격 급등기에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

- 최근 금리 상승으로 20·30세대 주택구입이 감소할 경우 전세 수요가 증가하여 전세대출 수요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2030 주택거래 비중 변화(수도권)



연령별 주택구입시 자금조달 수단



## □ 주식,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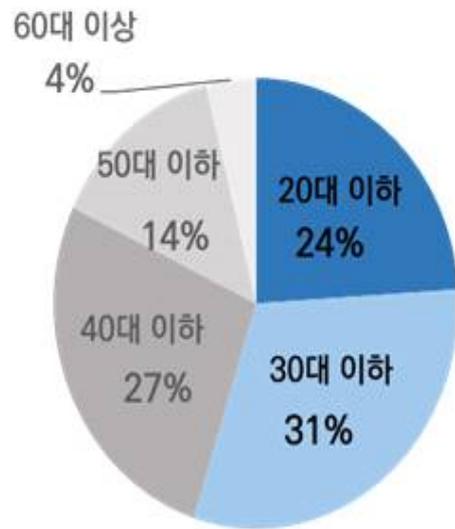
- 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

\* 2030세대 신용용자 잔액(주요 10개 증권사, 조원) : ('20.6말)1.9 → ('21.6말)3.6

KOSPI 투자잔액 및 전년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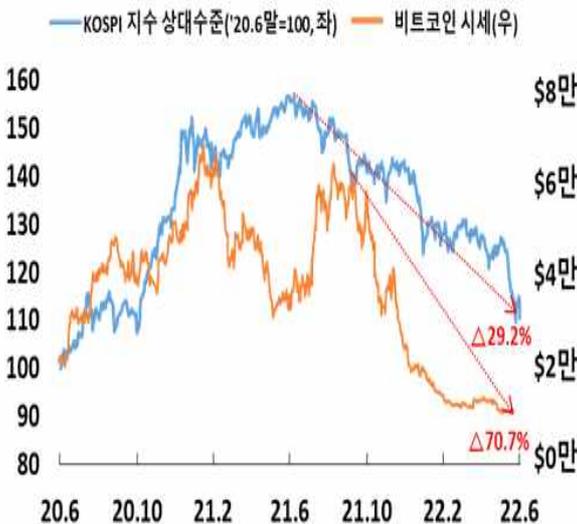


가상자산 투자 연령별 비중('21.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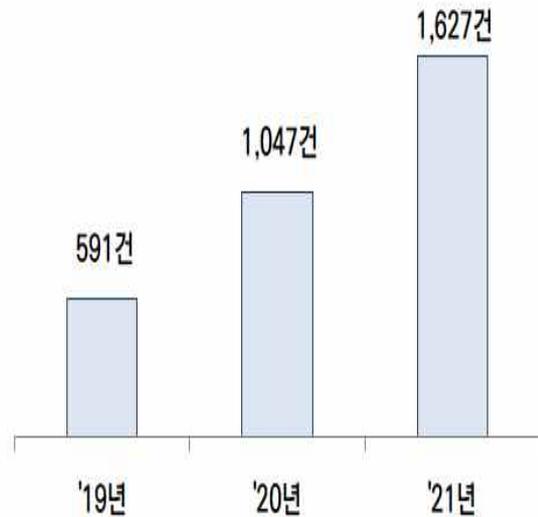


- 최근 금리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투자자가 투자실패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

KOSPI 지수 및 비트코인 가격 추이



주식투자 중독 상담 건수



\* 美 coinmarketcap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 시민 등 취약차주 부실 및 금융접근성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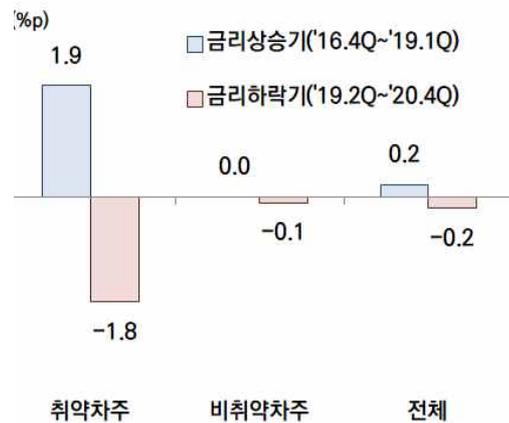
- 가계대출 중 약 5.0%\*(93조원)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부실위험 대출로 추정

\* 취약차주 :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NICE 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

취약차주 대출 규모(조원)



금리변동시 연체율 변동폭(%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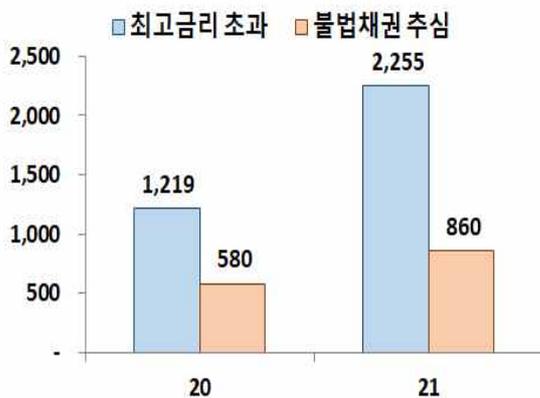


- 특히,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될 경우 생계곤란 및 불법사금융 노출 등 사회문제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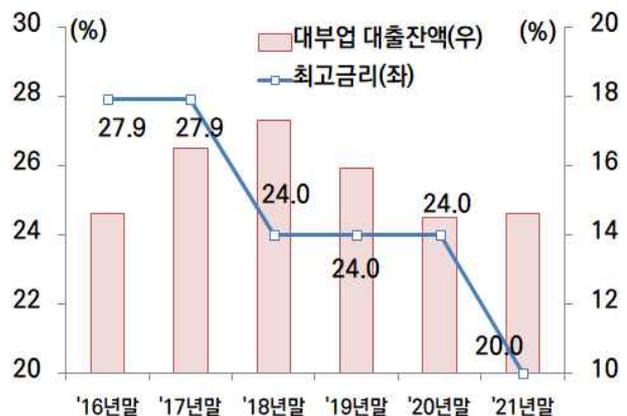
- '21.7월 최고금리 인하(20%)가 시장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

\* 저신용자(6~10등급) 중 43.4%가 대부업체에서 대출 거절(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

불법사금융 신고 접수 현황(건)



최고금리, 대부업대출 추이



### Ⅲ.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 ◆ (기본방향)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생계비, 긴급자금 등) 등 **금융지원 노력 강화**

####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자생력 회복**을 지원

-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20.4~)를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

코로나19 대응 금융구호('20.4~'22.9월)

새정부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22.10월~)

◎ **긴급 유동성 공급**(추가자금)

◎ 실질적 부채 **상환부담 조정**

·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적(누적) : 291조원

· **상환곤란 차주** →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 정책금융 대출·보증공급 : 36.4조원

· **금융부담 과다 채무** → 長期·低利 대환

※ 부채규모 : ('19말) 693 → ('21말) 916

· **경쟁력 취약 차주** →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사업자금 지원 등

①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감면**(60~90%)

② (대환대출) **고금리(7% ↑)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7조원\*)

\* 전체 소상공인(8.5조원)<sup>금융위</sup> + 저신용 소상공인(0.2조원)<sup>중기부</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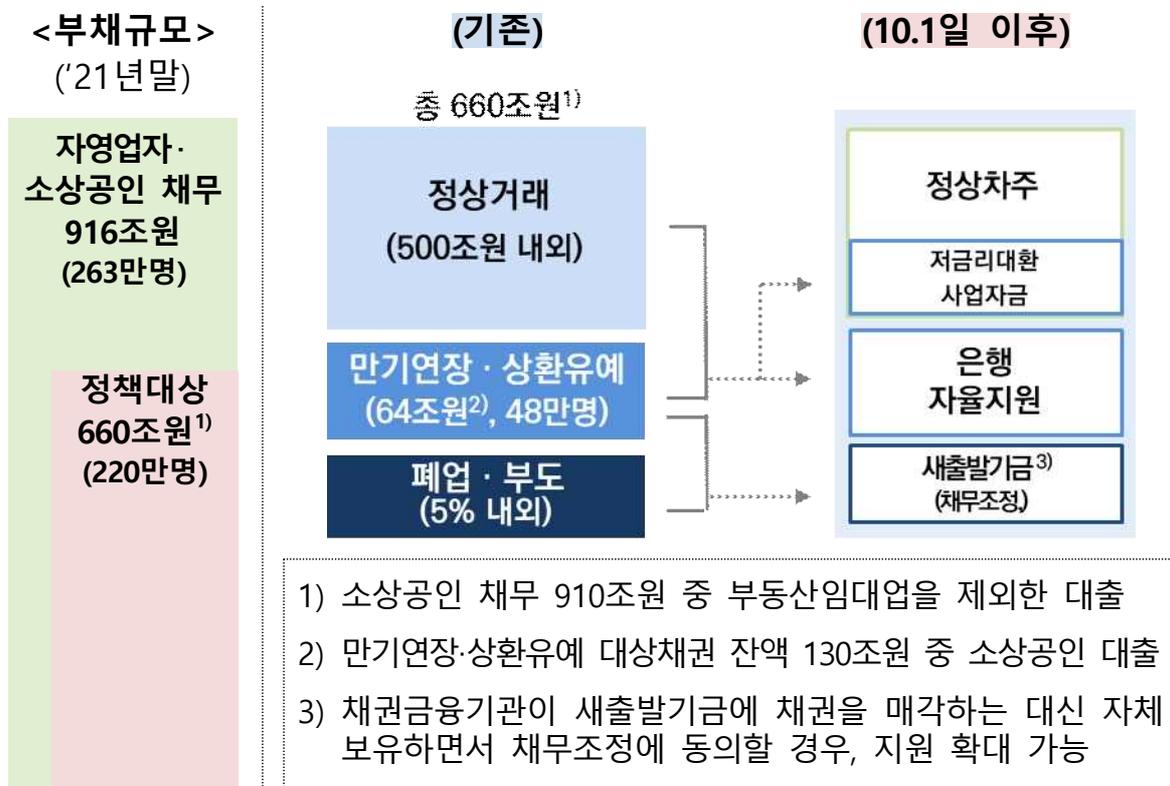
③ (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42.2조원\*)

\* 전체 소상공인(41.2조원)<sup>금융위</sup> + 폐업 소상공인(1조원)<sup>중기부</sup>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22.9월말)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충족한 보완장치 준비**

-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既조치
-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 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
-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을 논의중

⇒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



□ 관계부처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과 금융지원 프로그램**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 민간 금융권 서비스도 활성화

- **컨설팅<sup>중기부</sup>**(온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등)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추진
- \* 소상공인 컨설팅<sup>중기부</sup>과 금융지원(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sup>금융위</sup>이 연계되도록 금융기관 지점을 통한 안내·홍보도 강화
- 정책금융기관(서금원, 기은, 신보 등)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제고** 뒷받침

##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

### □ [상환부담 경감] 고정금리 전환 지원과 만기확대 추진

- 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40조원\* 공급(올해 2차추경, 내년 본예산을 통해 각 20조원)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  
-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20→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10bp)
- ②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  
\*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확대

### □ [임차안정] 대출·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

- ①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低利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 : (기준) 2억원 → (확대) 4억원 (보증비율은 90~100%)  
※ 전세대출 보증기관별 점유율(%) : (주금공) 45.2 (HUG) 22.2 (SGI) 32.6
- ②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를 확대<sup>국토부\*</sup>  
\* 버팀목 전세대출한도/대상 전세금 상한(억원, 수도권) : (기준)1.2/3.0 → (개선)1.8/4.5
- ③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연 300→400만원)<sup>기재부</sup>

### □ [금리상승 완화]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리전가 방지

- ①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 도입
- ②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금리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 ③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출시  
\* 예 : 7%이상 고금리차주에 금리 1%p 인하, 성실상환 연체 신용차주에 대출원금감면 지원

### 3

## 청년 등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 ◇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 강화

(민간 자율조정)	(공적 조정제도)	(법원 회생제도)
은행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연체채권 매입펀드	회생법원
연간 22만명 내외	신복위 11만명 / 캠코 3만건	8.1만명

###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

-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 미달 (예: 연체이전) 이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 지원(1년간 한시 운영)

구분	일반 프로그램	청년 특례 프로그램
이자감면	없음 (약정이자율 최대 15%)	<u>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 30~50% 감면</u> ※ 예: 10% → 5~7%(3~5%p ↓)
상환유예	원금 상환유예 기간중(0~3년) 약정이자율(최대 15%) 납부	원금 상환유예 기간중(0~3년) <u>저신용 청년* 이자율 3.25% 적용</u>
신청비	납부(5만원)	면제

\*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NICE 744점, KCB 700점)

### 2 캠코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과잉추심 우려 등 방지

-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연장(~'22.6말→~연말)하고, 필요시 규모 확대

\* 은행에서 3월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원금감면 등 지원

### 3 금융회사-신복위-법원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

- 관계기관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유기적 연계·협업 강화

\*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 신복위 채무조정 & 법원 개인회생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간 Fast-Track\* 활성화를 통해 청년·서민 등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

◇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로부터 보호

#### □ [서민금융] 서민·저신용층에 대한 공공민간의 금융 접근성 제고

-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금년중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 ('17~'21년 평균 공급액은 7.9조원 수준)
  - 최고금리(20%)와 시장금리간 격차 축소로 인한 저신용층의 탈락 방지를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
  -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강화
    - \* (청년) 햇살론유스 공급 0.2→0.3조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0.24조원, (저소득 근로자) 근로자 햇살론 공급 2.4→2.6조원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검토
  - \* 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은 '25년까지 한시 출연→추가재원 확보 필요
- 새희망홀씨 대출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점진·확대
-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 출시('23년)

#### □ [민생범죄] 서민을 올리는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 \* 예 :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現100만원),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 등
-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확대,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
- 불법 주식리딩방 등 사회관계망(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암행·일제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추진
  - \* 연 600개 이상 업체에 대한 암행·일제점검 실시(금감원·거래소·금투협)
  - \*\* 예) 당국에 등록하여 감독받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양방향 온라인 채널(단톡방 등)을 통한 투자자문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개정안 국회 논의중)

## IV.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
  -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 '22.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 예정
-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지속 강구
  - ①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한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
  - ②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한 현장소통 및 추가지원 모색

◆ 금번 대책 효과와 향후 경제여건 변동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추가 지원책 마련 추진

정책 과제	조치사항·시기	시행시기
<b>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b>		
▶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 자율관리계획 시행	자율관리 수립	9월하순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30조원)	신청접수 개시	9월하순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8.5조원)	신청접수 개시	9월하순
▶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내실화 등 자금 지원(41.2조원)	자금지원	7월
<b>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b>		
▶ 안심전환대출 25조원으로 확대 공급	내규개정	9월중순
▶ 저소득 청년층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	내규개정	9월중순
▶ 대출최장만기 확대(민간 30→40년, 공공 40→50년)	내규개정	민간 既시행 공공 8월중순
▶ 주공공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내규개정	10월
▶ 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주택도시시기금융계획 변경('22.7월)	8.1일
▶ 전·월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소득세법 개정 ( '22. 下)	'22. 하반기
▶ 예대금리차 월별 비교공시 도입	시스템 구축	8월
▶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 금리산정 투명성 제고	모범기준 개정	3분기
<b>3. 청년 등 자산투자자 재기지원 : 채무조정</b>		
▶ 청년 등 대상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시	신복위 협약개정	9월하순
▶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신청기간 연장	既시행
▶ 재기지원 관련 금융권-신복위-법원 연계 강화	협의체 신설	3분기
<b>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강 및 민생범죄 근절</b>		
▶ 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	-	연중
▶ 은행권 자체 서민지원 확대 유도	-	계속
▶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개선	제도개선안 마련	3분기
▶ 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 단속, 소비자 보호 강화	법률 개정	'22. 하반기

**별첨1****프로그램 신청 방법**

-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상담후 이용 가능

< 제도안내 및 문의·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

구분	기관명	연락처
<b>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b>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051-794-2024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신용보증기금	053-430-4345
	소상공인진흥공단	042-363-7204
▶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내실화 등 자금지원	기업은행	02-729-7000 02-729-6620
	신용보증기금	02-710-4590
	지역신용보증기금	042-480-4034
<b>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b>		
▶ 안심전환대출 25조원으로 확대 공급*	주택금융공사	051-663-8272
▶ 저소득 청년층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	주택금융공사	051-663-8272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	051-663-8402
▶ 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051-998-2265
<b>3. 청년 등 자산투자자 재기지원 : 채무조정</b>		
▶ 청년 등 대상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02-750-1155 02-750-1139
▶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한국자산관리공사	051-794-2024
▶ 재기지원 관련 금융권-신복위-법원 연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02-750-1072
<b>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강 및 민생범죄 근절</b>		
▶ 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02-2128-8086
▶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신고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SNS 기반 불법행위 신고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9월 이후 신청 가능

\*\* 10월 이후 신청 가능

**별첨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 $\alpha$  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규모	경과 및 계획
소상공인	<b>① &lt;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gt;</b> ■ (개요) 새출발기금 설립 → 부실(우려)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 일시상환 → 분할상환(최장 20년까지), 이자·원금 감면(60~90%) 등 ■ (예산) '22년 캠프출자 1.1조원 '23년 2.5조원	30조원	■ 6월, 세부조건 협의 ■ 7월, 금융권 협약 체결 ■ 8~9월 시행령 등 개정 전산구축 ■ 9월 하순경 시행예정
	<b>② &lt;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gt; '22.10월 시행</b> ■ (개요)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 (예산) '22년 신보출연 0.68조원	8.5조원	■ 6월, 세부조건 협의 ■ 7월·9월 규정개정 및 전산구축 ■ 9월, 금융권 협약 ■ 9월 하순경 시행
	<b>③ &lt; 맞춤형 자금 지원 &gt; '22.下 시행</b> ■ (개요) 자영업자 맞춤형 저리신규대출 지원 ■ (예산) '22년 신보출연 0.2조원	41.2조원* * 예산사업 3.3조원 * 자체사업 38조원	■ 6월, 상품설계 및 시스템 구축 ■ 7월중 시행 예정
서민금융	<b>④ &lt;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gt; '22.6월 시행</b> ■ (개요)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 (예산) '22년 서금융원 출연 150억원	0.1조원	■ 6월, 既시행
	<b>⑤ &lt;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 &gt; '22.下 시행</b> ■ (개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 실시 ■ (예산) '22년 서금융원 출연 480억원	0.24조원	■ 6~7월, 상품설계 및 전산개발 관련 금융권 협의완료 ■ 7~9월, 내규개정 및 전산구축 ■ 10월초 시행예정
가계차주	<b>⑥ &lt; 안심전환대출 &gt; '22.下 시행</b> ■ (개요) MBS유동화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 인하 ■ (예산) 주금공 출자 1,090억원	45조원	■ 6~7월, 상품설계 및 금융권 협의 ■ 7~8월 내규개정 및 전산구축 ■ 9월중 시행 예정
계	예산소요 4.7조원('22~'23년)	125+ $\alpha$ 조원	-

\* '23년 예산편성 논의중